

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·규칙심의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”을 “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”으로, “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”을 “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영 제74조의2제1항제1호”를 “영 제91조의11제1항제1호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전문매각기관의 선정)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압류한 재산이 <u>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</u>(이하 “예술품등”이라 한다)인 경우에는 예술품등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 중에서 <u>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</u>(이하 “전문매각기관”이라 한다)을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공모 절차 등을 통하여 <u>영 제74조의2제1항제1호</u>에 해당하는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기관(이하 “대상기관”이라 한다)을 선정한다.</p> <p>1. 2. (생략)</p>	<p>제4조(전문매각기관의 선정) ① ----- ----- ----- <u>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</u>----- ----- ----- <u>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<u>영 제91조의11제1항제1호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